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한병도·강선우·박홍근

이언주 • 윤준병 • 위성락

위성곤 • 진선미 • 박정현

김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, 경 찰,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.

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 2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 및 제4항에"를 "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"로, "외로"를 " 및 제5항에 따른 열람 목적 외로"로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에 따른 현장출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일, 신고접수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열람하도록할 수 있다. 다만, 열람되는 정보는 제22조제2항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, 지방자치단체,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 사항에 포함되는 정보로 한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아동학대정보의 관리	제28조의2(아동학대정보의 관리
및 제공) ① ~ ④ (생 략)	및 제공) ① ~ ④ (현행과 같
	<u>수</u>)
<u><신 설></u>	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
	도 불구하고 「아동학대범죄의
	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1
	조에 따른 현장출동 업무의 수
	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
	접수일, 신고접수유형 등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아동학대
	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경찰관
	서의 장에게 열람하도록 할 수
	있다. 다만, 열람되는 정보는
	제22조제2항 및 「아동학대범
	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	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
	관리, 지방자치단체, 아동보호
	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 사항
	에 포함되는 정보로 한정한다.
<u>⑤</u>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	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
해아동관런 정보를 취득한 사	<u>에</u>
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	
<u>외로</u>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	<u>및</u> 제5항에 따른 열람

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	목적 외로	
하여서는 아니 된다.		
<u>⑥</u> (생 략)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	